

朝鮮 初期 布貨 禁止令

최 규 순[†] · 고 부 자*

東華大學校(上海) 服裝學院,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The Bans on Po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Kyu-soon Choi[†] and Bouja Koh*

Dept. of Chinese Traditional Costume, University of Dong-hua at Shanghai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5. 5. 19. 접수 : 2005. 9. 3. 채택)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ban on 'Po[布]', including hemp and ramie, on the basis of *Joseon Wangcho Silok (the True Record of Joseon Dynasty)*. Po is the important point which can help to understand the people's life related with clothing. This paper showed that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e state had forced kinds of bans on some fabrics many times. Among the bans of the fabrics-making the main part was the bans on Po, along with rice, used as money in those days. The state had on Po enacted on the policy to intend to promote paper money circulation more widely. However, people didn't want to use paper money. The reason why cloth could be practical and functional as a kind of currency was that people could make clothes with it at any time while they used it as money. People avoided using paper money that could not be used in that way, and so did public officials. At that time, Po that was generally used as money was the hemp of five warp threads. The measurement of the hemp in 7chi[척; a Korean inch] by 35chok[尺] and 32cm by 16m by modern metric. It also showed that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blended fabrics are the fabrics that were made of raw silk-threads and cotton threads as warp and weft respectively. However, the fact that there is a record of 'Jeo Ma Gyo Jik Po U[苧麻交織布衣](blended fabrics and clothes made of ramie and hemp) and there appear the new proofs of the fieldwork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concept of blended fabrics might be various or changcable as time passed.

Key words: Joseon Dynasty(조선), cotton cloth(면포), hemp cloth(마포), making blended fabrics(교직).

1. 서 론

우리나라 服飾禁制(이하 '禁制'라 함)에 대한 연구는 金東旭이 「李朝 冠帽 始末」¹⁾에서笠帽의 금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李朝 初의 服飾 禁制」²⁾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까지 5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조항들이 조금씩 추가되었다는 외에 큰 틀에 있어서는 金東旭에 의해 세워진 체계와 이론이 거의 그대로

[†] 교신지자 E-mail : bbaneul@hanmail.net

1) 김동욱, "李朝 冠帽 始末," *야세야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46).

2) 김동욱, "李朝初의 服飾禁制," *중앙대학교논문집(인문과학편)*, 제7집 (1962).

답습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연구 주제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布의 금제에 대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조선 초기 생활상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朝鮮初期”라 함은 俞東旭의 이론을 받아들여 朝鮮王朝 開國부터 4代 世宗代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는 「李朝初의 服飾禁制」에서 조선의 법제적 기틀이 마련되기는 成宗代의 『經國大典』頒布以後지만, 조선 創業 이후 守成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은 世宗代³⁾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피륙은 狹義로 소재가 식물성 섬유인 것만을 한정하고, 廣義로 끊지 않은 疋 상대의 옷감이 될만한 천의 총칭을 의미한다. 본고에서의 피륙은 광의의 피륙을 말하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생활용품의 장식으로도 사용되는 천연섬유를 소재로 하는 모든 것까지를 포함한다. 즉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를 포괄하는 천연 섬유 소재의 옷감·실[絲綉]·線과 이외에 천연가죽도 포함한다. 또 布는 위의 피륙 중에서 그 명칭에 “布”가 사용된 옷감을 의미하고, 이에 는 麻布, 綿布, 苧布 등의 식물성 섬유와 또 이에 의한 交織布를 포함한다.

연구 내용은 먼저 조선 초기의 복식금제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布의 금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楮貨 사용과 관련하여 금제의 대상이 되는 常五升布·五升布·五綜布·籬布의 개념을 정리하고, 또 당시 倭와 中國에 보내는 布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布의 幅과 길이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또한 楮貨를 유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布를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단과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貨幣로서 布를 고집하는 이유와 그들의 사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苧麻交織布衣”라는 기록을 통하여 交織이 絹織이나 일반 布와 다른 점과 함께 교직이 의미하는 바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달랐음도 밝히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朝鮮王朝實錄』(이하 『實錄』이라 함)을 주로 하였다.

II. 조선 초기 피륙 금제

피륙에 대한 조선 초기의 금제는 太祖 3년 남의 나라 물건이어서 흉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紗羅綾綺의 사용을 금하고, 서민이나 工商賤人들은 비록 직물이 있더라도 絹과 斜皮를 禁하는⁴⁾ 것으로 시작한다. 태조 7년 定宗 即位時의 教旨에서는 고려에서 이어진 사치 풍속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하여 金銀珠玉과 함께 眞彩絲·花段了 등을 禁하였다⁵⁾. 정종 2년 太宗 즉위시에는 왕이 입는 옷의 綾段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고, 모두 紬와 布를 쓰게 하였다.⁶⁾ 태종 9년에는 主婦와 從婢의 笠帽는 苧布만 쓰고 羅綺의 사용을 금하였으나,⁷⁾ 12년에 사헌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上下가 아직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하여 羅紗段子의 笠帽를 금할 것을 다시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⁸⁾ 14년에는 大小臣僚의 交綺衣服을 금하였고⁹⁾, 또 자리[席子]의 네 모서리에 두르던 紫紬를 藍絹로 대신하여 사치를 막고자 하였으며, 御覽笏記의 紅綾衣를 綾花紙로 대신하도록 하였다.¹⁰⁾ 16년에는 거친 紬를 사용하여 석자의 線을 두르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細紬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3) Ibid.

4) 太祖實錄 卷6, 태조 3년 6월 甲午, “兩府外毋得紗羅綾綺玉纓子環子……庶人及工商賤隸 雖有職者 毋得用銀絹斜皮.”

5) 太祖實錄 卷15, 태조 7년 9월 甲申, “其金銀珠玉眞彩絲花段了等物 一皆禁斷.”

6) 定宗實錄 卷6, 정종 2년 11월 癸酉, “服之衣一除綾段皆用紬布.”

7) 太宗實錄 卷17, 태종 9년 3월 壬戌, “大小婦女從婢之服 不許澳裙 其笠帽則只用苧布 不許羅綺 其帽襪長短 不與主婦笠帽相等.”

8) 太宗實錄 卷23, 태종 12년 6월 丁卯, “四品以上正妻 着露衣襖裙笠帽. 五品以下正妻 只着長衫襖裙笠帽 不許着露衣……宮女上妓外 庶人婦女及從婢賤隸之服 只用紬苧布蒙頭衣 不許羅紗段子與笠帽襪裙. 上妓亦不許笠帽……”

9) 太宗實錄 卷27, 태종 14년 6월 甲寅, “凡大小臣僚交綺衣服起子靴……一皆痛禁.”

10) 太宗實錄 卷28, 태종 14년 12월 庚午, “禁奢侈 宮中席子 當用紫綾緣邊四隅 亦以錦飾 上惡其侈而無益 命以藍絹代紫綾 除錦飾……御覽笏記除紅綾衣 代以綾花紙.”

문제를 제기하며, 各殿의 자리의 선을 紫紬 대신 鴨頭綠의 七升 木綿으로 하도록 명하였고, 동시에 대궐 안의 어육 이외에는 紫紬를 일체 금하도록 하였다.¹¹⁾ 또 중궁이 “細紬로써 地衣에 선을 두른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즉시 목면으로 바꾸도록 하였다.¹²⁾ 18년에는 예조에서 婚姻의 事宜를 올린 중에 衾枕의 綾段 사용을 금하여 貧寒한 자들이 혼인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의하지만¹³⁾ 윤택 받지 못한다. 또 같은 해 본국의 소산이 아닌 段匹·綾羅를 금한 것과 같이 絹子·丹木·白礬 등의 물건도 금하여 工商賤隸의 부리가 깊게 쓸들인 안감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¹⁴⁾

세종 2년에는公私간에 佛事를 행할 때 羅花의 사용을 금하고 紙花를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⁵⁾ 4년에는 內資·內瞻寺에서의 綾羅 직조를 금하고 그 工匠들을 尙衣院에 붙이라고 명하였다.¹⁶⁾ 이는 능라 직조를 담당하는 소속 官司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經國大典』에는 尙衣院 소속의 綾羅匠이 105 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외의 관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紡織匠이 상의원(20명), 내자시(30명), 내섬시(30명), 濟用監(30명)에 각각 소속되어 있을 뿐이다.¹⁷⁾ 상의원 소속의 능라장은 『經國大典』 반포 이전인 世祖 6년(1460)에는 126명이었다.¹⁸⁾ 따라서 세종 4년 내자시와 내섬시의 능라 직조를 금한 이후에는 상의원에서만 능라를 직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에서 처음으로 段子織造色을 설치하기는 태종

16년의 일이고,¹⁹⁾ 태종 17년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실이 아닌 國內의 蠶室에서 난 실로 내자시에서 처음 紗와 綾을 짜서 바쳤는데, 이 때 지방의 眞絲도 紈段子 1필도 함께 바쳤다.²⁰⁾ 이렇게 公的으로 건직물을 짜면서 수령들이 앞다투어 繭絲를 많이 진상하였고, 잡실의 公用 桑木으로 충당이 안되어 民家의 桑葉을 착취하는 폐단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 13년에 巡察使의 직분으로 사망을 순회한 후 보고한 判府郭 최윤덕의 進言을 들은 후, 세종은 민가 상업의 채취를 금하는 습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 하여 충청도 감사에게 엄중한 적발을 가해 이를 금지하도록 傳旨을 내린다.²¹⁾ 세종 11년에는 금령조문을 요약·게시함으로써 백성들이 무지로 인해 법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 내용 중에 부녀를 隨從하는 여종의 笠帽에 羅絹를 사용하는 것을 다시 명시하였고, 서민과 工商賤隸의 貂裘·絹子 사용을 금하는 것도 조문에 넣었다. 또 上下 의복의 升數가 구분이 없다 하여 신분에 따라 苧麻布·蘇紬·木絲·交綺의 升數를 규정하였다.²²⁾ 23년 6월에는 各道의 觀察使와 道節制使에게 正朝·冬至·端午·誕日과 講武 때 進上하는 雜物에 사라능단을 쓰지 말도록 傳旨하였다.²³⁾ 28년에는 의정부에서 올린 服色詳定條件을 集賢殿에서 의논하게 하였는데²⁴⁾ 이때 정한 내용은 31년에 의정부에서 다시 금제 조건 3개항으로 정리하여 아뢰었다. 이에 의하면 流品朝士·衣冠子弟·成衆官 외는

11) 太宗實錄 卷31, 태종 16년 5월 壬辰, “各殿席緣 除紫紬 用鴨頭綠七升木綿 遮日及多人席緣 用南染正五升布 京中各司外方各官席緣 并用五升布 兩內 御褥外 紫紬褥一禁.”

12) 太宗實錄 卷31, 태종 16년 5월 壬辰, “中宮云 以細紬緣地衣 是亦安實 卽令代以木綿.”

13) 太宗實錄 卷35, 태종 18년 5월 壬子, “衾枕以綾段爲之 貧寒者有失時之嘆 若非本服綾段者 以本土所產紬與綿布爲之.”

14) 太宗實錄 卷36, 태종 18년 7월 庚戌, “段匹綾羅 非本國所產 已有禁令 但絹子及丹木白礬等物 亦非本國所產 而未有禁令 商賤隸之徒 染爲衣裘 願自今一皆禁止.”

15) 世宗實錄 卷9, 세종 2년 8월 癸丑, “公私佛事用紙花 毋用羅花.”

16) 世宗實錄 卷5, 세종 4년 10월 乙未, “命內資內瞻寺勿織綾羅 其工匠屬丁尙衣院.”

17) 經國大典 卷6, 刑典, 京工匠.

18) 한우근 외, (譯註)經國大典 譯釋篇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 772.

19) 太宗實錄 卷31, 태종 16년 5월 己亥, “始置段子織造色.”

20) 太宗實錄 卷34, 태종 17년 8월 乙巳, “內資寺 獻紗綾各三四 以蠶室所獻之絲織之也 并獻鄉眞絲 所織段子一匹.”

21) 世宗實錄 卷51, 세종 13년 3월 乙酉, “遂傳旨忠清道監司曰 蠶室蠶蠶時 毋取民家桑葉 已有禁令 今聞道內清風郡 於養蠶時 或採民家桑葉 自今嚴加糾察.”

22) 世宗實錄 卷43, 세종 11년 2월 辛巳, “大小婦女 從婢之服 不許襪裙笠帽 則只用苧布 不許羅絹……上下衣服升數無等 苧麻布蘇紬木絲交綺 一品至兩班子弟 用十二升以下 工商賤隸八升以下 貂裘 兩班子弟外 工商賤隸 不許服用 違者禁止……庶人及工商賤隸 斜皮靴鞋 絹子衣服 禁止……僧人黑細麻布衣 禁止.”

23) 世宗實錄 卷93, 세종 23년 6월 戊子, “進上雜物勿用紗羅綾段 金線金銀.”

24) 世宗實錄 卷112, 세종 28년 5월 壬辰.

사라능단과 綵絹으로 만든 囊了를 금하고, 양반 부녀와 女妓 외에는 紗羅綾段鞋을 신지 못하게 하였다.²⁵⁾ 이 외에 몇 차례의 포에 대한 금제가 있었으나 이는 다음 줄에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상 살펴본 『實錄』에 나타난 조선초기의 피륙에 대한 금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태조 7년 9월

〈표 1〉 조선초기 피륙 禁制

연 대		금제 내용	
태조	3년(1394) 6월 26일(甲午)	· 의정부와 중추원 외의 紗羅綾綺 사용 · 모든 庶人·工商賤隸의 絹·斜皮	
	7년(1398) 9월 12일(甲申)	· 眞彩絲·花段子	
정종	2년(1400) 11월 13일(癸酉)	· 왕이 입는 옷의 綾段 사용	
태종	2년(1402) 4월 19일(辛未)	· 五升布 (楮貨 관련)	
	2년(1402) 5월 24일(丙午)	· 常五升布 (楮貨 관련)	
	9년(1409) 3월 19일(壬戌)	· 大小婦女 笠帽의 羅絹 사용	
	10년(1410) 8월 22일(丙辰)	· 백성들의 帶五升布 직조 (楮貨 관련)	
	10년(1410) 9월 14일(戊寅)	· 籬布 (楮貨 관련)	
	10년(1410) 10월 1일(甲午)	· 常五升布 (楮貨 관련)	
	14년(1414) 6월 13일(甲寅)	· 大小臣僚의 交綺 의복	
	14년(1414) 12월 1일(庚午)	· 궁중 內 자리 (席子) 모서리의 紫色 綾 線 장식 · 御覽笏記의 紅綾衣	
	15년(1415) 6월 22일(丁亥)	· 各殿의 手巾 手巾 사용	
	16년(1416) 5월 1일(壬辰)	· 細布 사용	
	16년(1416) 5월 1일(壬辰)	· 各殿의 자리의 紫紬 線 사용 · 闕內 御褥 外的 紫紬 纒[褥] 사용	
	16년(1416) 5월 1일(壬辰)	· 中宮殿 地衣의 細紬 線 사용	
	18년(1418) 7월 2일(庚戌)	· 絹子	
	세종	2년(1420) 8월 17일(癸丑)	· 公私 佛事에서의 羅花 사용
		4년(1422) 10월 11일(乙未)	· 內賓·內應寺에서의 綾羅 직조
11년(1429) 2월 5일(辛巳)		· 大小婦女 笠帽의 羅絹 사용 · 工商賤隸의 絹子 사용 · 승려의 黑細麻布 의복	
12년(1430) 10월 15일(壬午)		· 布의 사용 (楮貨 관련)	
23년(1441) 6월 23일(戊子)		· 進上 물품의 紗羅綾段 사용	
28년(1446) 9월 5일(庚午)		· 돛자리의 綿紬 線 사용	
28년(1446) 9월 7일(壬申)		· 『六典』에 정해진 7寸의 넓이에 準하지 않은 布	
31년(1449) 1월 25일(丙午)	· 流品朝上·衣冠子弟·成衆官 外的 九升布 이상 의복·紗羅綾段과 綵絹으로 만든 주머니·眞絲帶 · 양반 婦女·女妓 外的 紗羅綾段 鞋		

25) 『世宗實錄』卷123, 세종 31년 1월 丙午. “九升布以上衣服及紗羅綾段綵絹囊了護膝眞絲帶鞞皮鞋 流品朝上衣冠子弟成衆官外 痛行禁止. 兩班婦女及女妓外 勿用紗羅綾段鞋. 男人皮草鞋 則勿論尊卑禁止.”

12일은 정종의 卽位 敎들이므로 정종대의 금제로 보아야 하고, 정종 2년 11월 13일은 태종 즉위일이므로 이 조항은 태종의 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종과 세종의 在位期間 - 태종:18年, 세종:32年 - 과 비교해 보면 태종대에 피륙에 대한 금제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특정 物品에 대한 지속적인 금제가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한 두 件씩 개별적으로 금제를 내리고 있다. 단 楮貨 사용과 관련한 布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금제가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태종 2년과 10년, 세종 12년에 나타나는데 태종대는 두 차례의 楮貨法 시행 시기와, 세종대는 銅錢法의 시행 시기와 일치한다.

Ⅲ. 조선 초기 布의 종류

1. 布의 종류

조선 초기의 기록에 나타나는 布의 명칭은 五升布, 五綜布, 常五升布, 羅布, 正五升布, 常布, 正布, 白正布, 苧布, 麻布, 綿布, 細絲布, 常綿布, 木絲布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五升布 · 常五升布

위의 명칭 중 五升布 · 五綜布 · 常五升布 · 羅布는 당시 布貨로 쓰였던 麻布를 말하며, 이들은 저화 사용과 관련하여 동시에 禁制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상오승포'가 금제의 대상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명칭인 것 같고, 오승포는 이 상오승포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오승포는 태종 10년의 기록²⁶⁾을 마지막으로 『實錄』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세종 27년에는 備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바치는 丁錢에 대해 “『元典』에 五升布 1백 필로 정하였으나 이제는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이니 正布로 바꾸어 30필로 작정하고자 하니...”²⁷⁾라 하였고, 세종 31년에는 “그 丁錢을 五升布로 바치기를 허락하였으나 지금 민간에서 쓰지 않는 바이나 綿布로 대신하여 正布는 20필, 면포는 15필로 하소서”²⁸⁾라 하였다. 이로 보아 이 시기가 되면 오승포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오승포는 마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마포를 의미하는 오승포의 사용이 줄어든 것은 면포의 재배 및 사용의 확대와 관련이 되는 듯 하고, 여기에는 楮貨를 유통시키고자 오승포에 대해 내려졌던 금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의 오승포는 마포가 아닌 면포를 의미하게 된다. 世祖代의 雜貨 항목에 오승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²⁹⁾ 오승포라는 명칭은 여전히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이미 마포가 아닌 綿布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종 8년에는 오승포가 五升正布와 五升綿布로 구분되고,³⁰⁾ 중종 39년에는 “이른바 면포는 모두 五升이다.”³¹⁾라 하였다.

2) 五綜布

‘五綜布’는 피륙의 升數를 낼 때 經[綜]의 數를 계산³²⁾하는 것으로 미루어 오승포나 상오승포와 같은 의미로 본다. 여기서의 ‘綜’은 피륙을 짤 때 경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綜廣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綜에 대해 김병하는 “升은 綜이다.”라고 하였고³³⁾, 민길자도 동일신라의 30綜布와 40綜布에 대한 인구에서 升과 綜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³⁴⁾ 또 세종 20년에 錢幣와 米 및 布 사용에 대한 방책을 논

26)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10월 甲午, “禁用常五升布”

27) 世宗實錄 卷109, 세종 27년 7월 丁亥, “丁錢元典 以五升布百匹爲定 然此布 今所不用之物 欲易以正布 酌定三十四匹”

28) 世宗實錄 卷123, 세종 31년 1월 庚戌, “其丁錢許納五升布 今民間所不用 代以羅布 正布則二十四 羅布則十五匹”

29) 世祖實錄 卷14, 세조 4년 11월 戊戌, “傳旨戶曹曰 楮幣之法 不能通行 有無乖於民情 今後細布綿布正布與五升布楮幣等雜貨”

30) 成宗實錄 卷75, 성종 8년 1월 丁未, “禮曹啓 日本國通信士事目…五升正布三十四 五升綿布 三十四”

31) 中宗實錄 卷102, 중종 39년 4월 壬辰, “俗以五十四爲一 同所謂綿布皆五升也”

32) 1升은 80올이고 5升은 400올인데, 이는 經絲의 수를 셈 것이다.

33) 김병하, “李朝前期의 화폐유통,” 慶熙史學 2 (慶熙史學會, 1970), p. 32.

34) 민길자, “우리나라 직물 세력기술에 관한 연구-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大麻와 苧麻 직물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한림원, 2000), pp. 17-24.

·이하면서 “민심에 순응하여 다시 오종포를 쓰도록 하자.”³⁵⁾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오종포와 오승포는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3) 羅布

‘羅布’는 상오승포를 의미하거나 최소한 상오승포와 함께 화폐로 동등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前朝 때에 綾·羅·瓶으로 貨를 삼았는데 後世에 布貨로 대신하였으니…，…우리나라에서만 前朝未流의 폐단에 구애되어 그대로 羅布를 사용하고 있으니”³⁶⁾라는 기록으로도 증명된다. 太宗代에 지화법을 시행하면서는 추포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고,³⁷⁾ 이후 저화 사용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창고에 쌓여있는 추포를 내어 세 끝으로 끊어 나누어 준다.³⁸⁾

이렇게 추포는 상오승포와 함께 화폐로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듯하다. 다만 ‘羅’라는 글자의 의미상 오승포 중에서 보통의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추포는 中宗代에는 ‘羅惡綿布’를 의미하는 ‘惡布’로 등장하는데, 이 때의 추포는 二升과 三升의 綿布였다. 조선 후기에는 一升과 二升布가 추포로 불리었고 그 모습도 마치 구멍이 성긴 그물과 같았다 한다.³⁹⁾ 즉 추포는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 상오승포를 의미하던 것에서 후에는 ‘품질이 粗惡하여 실용가치가 없는 배’⁴⁰⁾로 변한 것이다. 이 추포의 등장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의견을 제기한 연구가 있다. 송재선은 正布로서의 오승포가 고액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부수되는 소액 화폐를 사회경제적 상황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용가치가 없는 추포가 유통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16C

市中에서는 화폐단위의 소액화를 수반하는 상업영역권이 확대되고 있었고, 이에 오승포를 잘라서 쓰다가 대신 삼승포를 짜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치는 오승포의 절반이었다. 그러나 삼승포 역시 옷감으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화폐 용도로만 쓰기에 부적합하므로 전적으로 화폐로만 통용될 이승포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이승이나 삼승의 추포 출현은 단순한 품질 하락이 아니라 소액의 상업 행위에 필요한 낮은 화폐 단위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았다.⁴¹⁾

4) 常布·正布

‘常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태종대에 백성들이 布의 금제에도 불구하고 포를 사용하는 문제와 추포를 숨기는 문제를 논하면서 추포와 동등한 의미로 상포를 말하고 있다.⁴²⁾ 또 상포에 대해서는 世祖代에 雜貨 사용과 관련하여 감화로 유통될 만한 것을 열거한 조목에 보인다. 즉 4년 11월에는 주포·면포·정포·오승포·저배가⁴³⁾, 한 달 후인 12월에는 주포·면포·정포·상포·저화가 열거되고 있다.⁴⁴⁾ 이것으로 본다면 상포도 오승포나 추포 등의 布貨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經國大典』에서는 “正布 1필은 常布 2필에 준한다.”⁴⁵⁾고 되어 있고, 중종대에는 “選上奴婢를 대신 세우는 役價를 五升綿布로 바치게 한 것은 이미 법으로 정했으니 모름지기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 五升布로 바치기를 독촉하면 貧窮한 백성이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원하여 常布 5필로 代納하는 자는 허락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⁴⁶⁾라 하여 오승포나 오승면포가

35) 世宗實錄 卷80, 세종 20년 2월 戊辰, “宜順民心…復用五絲布.”

36) 太宗實錄 卷19, 태종 10년 5월 辛巳, “前朝貨以綾羅瓶 後世代以布貨…我國家 泥於前朝未流之弊 仍用羅布”

37) 太宗實錄 卷19, 태종 10년 7월 丙寅, “復楮貨通行之法…戶曹啓請與羅布通行 許之.”

38)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11월 甲子; 卷21, 11년 1월 甲子.

39) 권인혁, “16C 저화 유통론과 그 배경,” *컨대사학* 8 (1993), p. 145.

40) 위유환, “조선전기 화폐유통정책의 역사적 의의,” *東國大東國歷史教育* 7·8 (1999), p. 271.

41) 송재선, “16C 綿布의 화폐기능,”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85).

42) 太宗實錄 卷21, 태종 11년 1월 壬午.

43) 太宗實錄 卷31, *Op. cit.*

44) 世祖實錄 卷14, 세조 4년 12월 甲戌, “刑曹啓 曾奉傳旨楮幣之法 不通有無 乖於民情 今後紬布綿布正布與常布楮貨等.”

45) 經國大典 卷二, 戶典, 國幣條.

46) 中宗實錄 卷34, 중종 13년 11월 甲辰, “選上奴婢代立價 以五升絲布納之. 既已立法 不須輒改 但一切以五升布督納貧窮之民 不能自備者必多 其中自願以常布五匹代納者 許之似便.”

상포보다 높은 가치로 책정된다. 즉, 태종대부터 세조대까지 상포는 오승포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經國大典』 반포부터 중종대까지의 사이에 상포와 오승포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세조 12년(1466)에 편찬된 『丙戌大典』⁴⁷⁾은 六典 체계를 갖추고 처음으로 나온 법전인데 戶典 國弊條에 “나라의 화폐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오승포를 上等으로, 三升布를 中等으로, 楮貨를 下等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⁴⁸⁾

『經國大典』과 중종대의 기록을 비교하면 처음에 常布는 오승포였는데 후에 상포로 쓰이는 화폐가 삼승으로 거절어지면서 오승포를 正布라 하였고, 상포는 이보다 가치가 떨어져 정포의 1/2의 가치가 되었다. 즉 세조대까지 상포와 오승포가 같은 의미로 쓰이다가 『丙戌大典』 편찬대부터 중종대까지의 사이에는 정포와 오승포가 같은 의미가 되고 상포는 삼승포를 의미하여 이보다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常’이라는 용어는 화폐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파록에 붙여졌던 접두사로 보이며, 升數는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正五升布 · 正布

정오승포와 정포에 대한 해석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태종 16년에 왕이 “정오승포 한 필 값이 얼마인가”를 물었을 때 당시 判書 黃肅은 “鈔 다섯 장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왕이 “그러면 正布 1만 필이면 鈔 5만 장은 얻을 수 있다.”⁴⁹⁾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정오승포와 정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 7년에는 昭格殿의 도량

〔道場〕 의식에 모시[布施]하는 것이 “예전에는 正布 한 필이었는데 중간에 변해서 다섯 베[五綜布] 한 필이 되었고, 또 변해서 楮貨 한 장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銅錢 1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⁵⁰⁾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정포와 오승포[오승포]는 다른 것이다. 세종 19년에는 “國初에는 곡식이 賤하여 대개 五綜布 한 필 값이 쌀로는 3·4斗이고 콩으로는 7·8두인데, 정포 한 필의 값이 오승포 네 필이니...”⁵¹⁾라 하여 정포와 오승포[오승포]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하고, 가격 차이가 1:4가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정포는 稅布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6) 苧布 · 麻布

‘苧布’는 모시베를 말하고, ‘麻布’는 삼베를 말하는 데 이 중 五升布가 화폐로 쓰였다.

7) 交織

交織은 經絲와 緯絲의 실을 달리하여 제작한 평직 물로 『林園經濟志』⁵²⁾에는 경사는 繭絲로 위사는 棉絲로 짠 것이 交織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교직 유물로 단국대학교 右宙善紀念博物館 소장의 濟州高氏(16C末 추정) 出土遺物이 있다⁵³⁾ <그림-1>. 이 유물은 경사는 견사로, 위사는 면사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교직에 대해 태종 16년에 苧麻交織布衣를 금하지 말도록 하는 기록이 있어⁵⁴⁾ 교직에 대한 개념이 再考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즉 교직이 경사와 위사의 실을 달리하여 제작한 것이라 할 때 태종대의 기록으로 보아 경사에는 苧, 위사에는 麻로 하거나, 경사에는 麻, 위사에는 苧를 사용하여 직조하였을 것이며 이는 『임원경제지』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이로써 교직이

47) 윤국일,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서울: 신서원, 1998), pp. 96-98. 『빙술대전』의 ‘戶典’은 庚辰年(1460)에 편찬되었다 하여 일명 ‘경신년 호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전’은 반포 실시된 이후 빙술년에 六典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수정되었다.

48) *Ibid.*, pp. 96-98.

49) 太宗實錄 卷32, 태종 16년 12월 乙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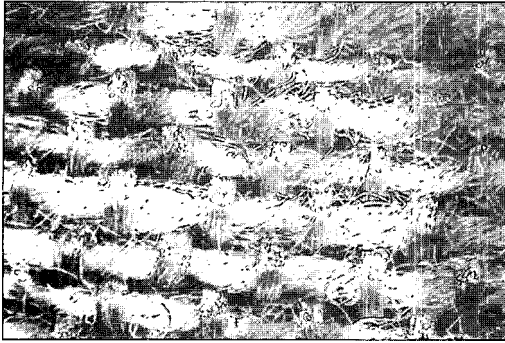
50) 世宗實錄 卷30, 세종 7년 10월 辛巳, “左代言趙從生啓曰 受靈寶道場行香之命 詣昭格殿 見道流布施 但銅錢一文而已 臣怪而問其故曰 答云 昔用正布一匹 中變爲五綜布 一匹 又變爲楮貨一張 今則錢一文.”

51) 世宗實錄 卷76, 세종 19년 2월 己巳, “國初穀賤 大槩五綜布一匹直 米三四斗 斗則七八斗 而正布一匹之直 五綜布四匹.”

52) 純祖代의 실화자인 서유구(1764~1845)가 晩年에 지술한 농업위주의 백과전서이다. 肅宗代의 洪萬選(1664~1715)이 쓴 『山林經濟』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저서 900여종을 참고 인용하여 엮었다.

53) 심연옥, 『한국식물문화사』 (고대식물연구소(ISAT), 2002), p. 77.

54) 太宗實錄 卷31, 태종 16년 4월 壬午, “勿禁苧麻交織布衣.”



〈그림 1〉 交織 부분국대.

濟州高氏 墓 출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삼인옥, 한국직물오원년, p. 77.

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거나, 시대에 따라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달랐을 수도 있다. 『秋官志』에는 “蓋交織細密難成”⁵⁵⁾이라 하여 교직이 세밀하게 짜여졌음을 알 수 있고, 또 交織布는 조선에 다녀가는 중국 사신에게 주는 선물로 쓰이기도 하였다.⁵⁶⁾

이렇게 경사와 위사의 실을 달리하여 직조하는 방법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전 지역의 “선내베”와 “춘포”가 그것이다. 선내베는 경사에 麻를, 위사에 麻와 綿絲를 섞어서 북 두 개로 두 올씩 번갈아가면서 짠다. 이렇게 짜서 염색하면 섬유의 특징상 삼베는 물이 굵게 들고 부명은 덜 들기 때문에 색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알롱달롱해 보인다”하여 “아롱베”라고도 한다. 춘포는 경사에 繭絲, 위사에 苧를 사용하여 직조한 것이다. 이 춘포는 제작과정이 어려워 여유 있고 솜씨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생산되었다.⁵⁷⁾ 또 咸鏡道 지역의 “아랑주”는 繭絲와 麻를 섞어서 짠 것이다. 繭絲를 건널 때 견사를 네 올 짜나 麻를 두 올 놓거나 또는 여섯 올 짜다 두 올 놓거나 하였다. 혹은 경사를 끼울 때 견사 사이에 두 줄 또는 세 줄로 삼베실을 섞어 끼워 세로 줄이 가도록 짠 것

이다. 이렇게 짠 아랑주에 물을 들이면 “아롱베”와 마찬가지로 삼베올과 비단올의 색이 濃淡으로 다르게 물들어져서 색다른 옷감으로 즐길 수 있었다 하며, 솜씨가 좋은 부인은 보기 좋은 “아랑주”를 짜두었다가 딸의 혼수로 또는 며느리의 예단으로 쓰기도 하였다.⁵⁸⁾ 한편 黃海·平安道 지역의 “아랑두”가 있는데 실을 섞어 짰다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명주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도 교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볏과 가을의 옷감으로 이용되었다.⁵⁹⁾

이상의 고찰을 통해 조선 초기 布의 종류에서 五升布·五蘇布·常五升布·麤布는 麻布로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통하여 동시에 화폐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화폐로 쓰인 오승포는 세종대에 마포에서 먼포로 대체된다. 추포는 高麗이래 조선초기까지 오승포였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이·삼승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상포도 오승에서 삼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고, 오승포는 정포로 불리게 된다. 이 외에 교직도 경사와 위사에 견사를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섬유만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布의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布의 폭과 길이

조선 초기 布는 국내에서 貨幣로의 구실 외에, 국제 관계에서의 交易品으로 많이 등장한다. 또는 중국으로 進獻하는 物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종 11년의 金銀進獻 면제 이후에는 金銀 대신에 조선의 토산물로 바치게 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진헌용 포는 細布인데 세종 5년에 “今後進獻學麻布並用十二升以上”⁶⁰⁾이라 하여 저포와 마포는 十二升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길이는 50尺이었는데 진헌하는 배를 50척으로 한 것은 중국 조정의 비단 25척의 배를 한 수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50척이 못되어도 47척 이상이면 진헌 물품에 사용하였다.⁶¹⁾ 세

55) 秋官志, 掌禁部, 中亭, 奢侈(奢侈).

56) 世宗實錄 卷3, 세종 1년 2월 丁丑.

57) 고부자, “의식주 생활풍습,” 大田民俗誌 下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pp. 1461-1462.

58) 문화재연구소,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咸鏡南口北道篇) 제12책 (서울: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p. 198.

59) 문화재연구소,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黃海口平安南北篇) 제11책 (서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0), p. 196.

60) 世宗實錄 卷17, 세종 5년 3월 甲辰.

61) 世宗實錄 卷121, 세종 30년 7월 癸巳.

종이 承政院에 이른 말 중 “우리나라에서 進獻하는 細麻布를 중국 조정에서 진귀하게 여기어 옛날에 太宗 文皇帝가 일찍이 바포 옷을 입었고 심히 아끼어 內帑에 갈무리해 두었으니 바포는 우리나라 方物 중 큰 것이다.”⁶²⁾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 바친 세포는 중국 조정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野人과 倭人에게 내려주는 苧布와 麻布는 八升 이하로만 쓰게 하였고, 길이는 35척으로 하였다.⁶³⁾ 35척으로 한 것은 당시 조선에서의 배가 35척으로 1필을 삼기 때문이었다. 布의 폭은 『六典』에 정한 바에 의해 7寸을 기준으로 하고 半寸 정도의 加減은 허용하였다.⁶⁴⁾

위와 같이 布는 외국과의 거래품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폭과 길이와 升數를 자세히 규정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布가 7寸 넓이에 35尺 길이를 1필로 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에 제정된 布帛尺은 『國朝五禮儀』과 田制詳定所 遵守冊의 포백척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五禮儀의 포백척 1尺은 44.75cm이고, 田制詳定所 遵守冊의 포백척 1尺은 46.73cm로 이 두 포백척 사이에는 1.98cm의 오차가 있다. 이 오차가 생긴 이유는 알 수 없다.⁶⁵⁾ 이를 근거로 세종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布의 넓이와 길이를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폭 7寸은 31.325cm와 32.711cm이고, 7寸 너비에서 半寸 정도의 加減은 허용하였다고 하였으니 半寸은 2.2375cm와 2.3365cm이다. 7寸에서 半寸을 加減하면 幅은 최소 약 29cm(29.0875cm)에서 최대 약 35cm(35.0475cm)로

평균 32cm이다. 35尺은 1566.25cm와 1635.55cm인데 이를 현재 단위인 1尺은 50cm으로 계산하면 31尺3寸2分 5釐와 32尺7寸1分1釐이다. 즉 길이는 약 32尺이 된다.

종합하면 세종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7寸 너비에 35尺 길이의 布는 현재의 미터법으로 계산했을 때 약 32cm 폭에 약 16m 길이이다.

IV. 禁制에 나타난 布貨

1. 楮貨 정책 추진과 禁制

조선 초기에 자인경제 체제하의 쌀이나 배 등의 物品화폐에 의한 유통질서를 극복하고 저화와 동전 등의 名目화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배경은 첫째 物품화폐 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명목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요청, 둘째 고려시대부터 각종 국내 화폐와 중국 화폐를 유통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배경, 셋째 집권적 지배 체제 정비 확립에 필요한 재정 조달, 넷째 화폐의 주조 발행을 통한 利權 장악, 다섯째 일찍이 화폐 경제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영향 등이다.⁶⁶⁾ 이를 위해 太宗代부터 楮貨를 동용케 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여파로 당시 화폐로 사용하고 있던 布의 사용을 여러 차례 금지하게 된다.

태종이 楮貨를 시행하고자 한 것은 元代 이래 明까지 이어지는 鈔法을 취한 것이었다.⁶⁷⁾ 태종 1년 좌의정 河崙의 건의에 따라 저화법을 실시할 것과 그 업무를 관장할 司贍署의 설치를 결정하였다.⁶⁸⁾ 사심서를 설치한 초기에 백성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은 쌀과 布票이라는 이유로 사헌부 등에서 이를 폐지할 것을

62) 世宗實錄 卷89, 세종 22년 5월 壬戌, “我國進獻細麻布 朝廷珍寶之 昔太宗文皇帝 嘗御麻布衣 甚愛惜 莊諸內帑 麻布 我國方物之大者也.”

63) 世宗實錄 卷80, 세종 20년 2월 甲戌, “議政府據禮曹早啓 今後 野人倭人 賜給苧麻布 用八升以下 長三十五尺 從之.”

64) 世宗實錄 卷113, 세종 28년 9월 壬申, “六典定爲七寸 或半寸加減者 亦許收納.”

65) 이은경,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역사학위논문, 1993), pp. 12-16, pp. 69-71.

66) 원유현, *Op. cit.*, pp. 264-273.

67) 太宗實錄 卷6, 태종 3년 8월 乙亥, 元의 世祖(1260~1294)는 即位 初에 中統交鈔를 만들어 유통시켰는데 燕京에 平準庫를 세워 물가를 均平하게 하고 鈔法을 권장하게 하였다. 24년(1287)에 다시 至元寶鈔를 만들어 頒行하고, 中統鈔와 并行하였다. 明太祖(1368-1398)는 즉위한 이래 服色을 바꾸고 徽號를 달리 하였으나, 楮幣의 법안은 그대로 前轍을 따랐다. “大元世祖皇帝即位之初 用安童丞相之議 造中統交抄以行 應有不便於民者 於燕京 建平準庫 以均平物價 通利鈔法…皇明 太祖皇帝 鑒有四海易服色殊徽 以新天下之耳目 獨楮幣之法 尚循前轍.”

68) 太宗實錄 卷1, 태종 1년 4월 甲子, “初置司贍署 令一 丞二 直長二 注簿二 以掌楮貨 從河崙之議 欲行鈔法也.”

칭하였으나 태종은 저화 사용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다.⁶⁹⁾ 이 때 설치한 사설서는 저화 사용이 실패하면서 태종 3년에罷하게 된다.⁷⁰⁾

사설서에서 저화를 만든 기록은 태종 2년에 처음 나오며⁷¹⁾, “저화에는 ‘常五升布와 通行한다.’”고 하였다.⁷²⁾ 이후 태종은 저화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정책의 하나로 관리들의 祿俸을 저화로 나누어 주어 병용시켰으며,⁷³⁾ 백성들이 國庫의 쌀을 사고자 하면 저화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 때 저화 한 장은 常五升布 한 켤에 준하였고, 이는 쌀 두 말[斗]의 값이었다.⁷⁴⁾ 또 민간에도 저화유통의 정책으로 楮貨通行法을 쓰는데 모든 저자[市]안에서 楮貨와 常布 반반씩으로 서로 사고 팔게 하였다.⁷⁵⁾ 그러나 민간에서의 저화 사용은 저조했던 듯하며 저화를 만드는 사설서에서도 織布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상오승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태종 2년에 “나라 사람들이 저화를 쓰지 않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처음으로 금제를 내렸고,⁷⁶⁾

얼마 후 京市囂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오승포의 사용을 금하는 방을 내어 붙이게 되었다.⁷⁷⁾ 그 다음달에는 戶曹에서 민간의 상오승포를 저화와 교환하여 주었다.⁷⁸⁾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저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布를 중시 여기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함께 저화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한 요인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생활에 위배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던 상오승포에 대한 금제는 몇 달이 못 가서 철회되고, 다시 저화와 상오승포를 겸용하게 되었다. 이 때 겸용하도록 허락한 이후 곧 저화는 자연적으로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⁷⁹⁾ 이후 저화를 다시 사용하자는 상소가 있었으나⁸⁰⁾ 태종은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사설서를 혁파하였다. 그러나 “만일 나라에 稅가 있다면 내 身後를 기다려서 다시 사설서를 세워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⁸¹⁾라 하였는데 이 말대로 태종 10년에 다시 저화를 동용케 하였고 처음에는 추포도 겸용하게 하였다. 이 때는 司贍庫로 하여금 오로지 出入을 맡게 하였고,⁸²⁾

69) 太宗實錄 卷2, 태종 1년 10월 丙子, “司憲府上疏 請罷司贍署 不允 疏略曰 吾東方 自古不用楮貨 而習用布貨 人人惡楮貨 願停造楮貨之役…民所重 米布而已 上曰 卿等之言然矣 雖然持之悠久 楮貨之法行矣 若楮貨之法行而 有弊於民 則予不得言而改之.”

70) 太宗實錄 卷6, 태종 3년 9월 乙酉, “罷司贍署.”

71)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1월 己丑, “司贍署進新造楮貨二千張.”

72) 太宗實錄 卷4, 태종 2년 9월 甲辰, “其楮貨之文 有曰與常五升布通行.”

73)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1월 庚寅, “命頒祿并用楮貨.”

74)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1월 壬辰, “命民庶以楮貨貿易國庫米 從議政府之請也 楮貨一張 准常五升布一匹者, 直米二斗.”

75)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4월 戊午, “申楮貨通行之法司平府啓凡市裏 楮貨常布爲半 交并買賣 買者不受楮貨 賣者不持楮貨者 買賣之物 並皆沒官. 從之.”

76)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4월 辛未, “禁用五升布.”

77)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5월 丙午, “出榜, 刻日禁用五升布…公私常五升布, 一皆通禁.”

78)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6월 壬戌, “命戶曹 以楮貨買得民間五升布二萬四千六百匹 初以楮貨一張 准五升布四匹 民皆不用 上聞之 命戶曹 以五升布一匹 准楮貨一張不口而買得二萬餘張 乃以五升布三匹 准楮貨一張 三斷其布而與之 民爭易之.”

79) 太宗 3년 8월 乙亥(太宗實錄 卷6)와 동년 9월 庚辰의 “전하께서 議政府에 내려서 可否를 의논하여 楮와 布를兼行하는 법을 정하였는데 얼마 뒤에 楮幣는 폐지되고 행하지 않았습니니다(殿下下議政府 議可否 定爲兼行楮布之法 既而楮幣廢而不行).”, “전하께서 이미 兼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백성들이 이를 폐지하였습니니다(殿下既下兼行之令而民廢之).”라는 기록을 보면 저화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겸용을 허락하면서 백성들이 저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연 도태된 듯하다.

80) 太宗實錄 卷6, 태종 3년 8월 乙亥; 同年 9월 庚辰.

81) 太宗實錄 卷6, 태종 3년 9월 乙酉, “罷司贍署 初大司憲李詹等再上疏 請復鈔法 上不允 至是三上疏曰 官不改設法不改立 民心未定 若以鈔法爲不可行 則帶司贍署以定民志 上謂朴錫命曰 欲行楮貨 不革司贍署可矣 不行楮貨則爲冗官革之可也 予欲不行楮貨 若有利於國 待予身後 復立司贍署 亦不難矣 取怨於民以利於國 亦何益之有哉 今後非大有利於國 而百世不變之事 毋立新法.”

82) 太宗實錄 卷19, 태종 10년 5월 辛巳, “議復用楮貨”;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7월 丙寅, “復楮貨通行之法 傳旨議政府舍人金孝孫曰 楮貨 古者美法 中廢而不行 予之過也 今司贍庫 專掌出入 以兩府爲提調官監察 監之又令印出頒行.”, “戶曹啓請與織布通行, 許之.”

兩府-議政府와 中樞府-로 提調官 監察을 삼아 이들 감독하고 또 印出하여 頒行하게 하였다.⁸³⁾

그러나 저화와 추포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 時價가 달라 추포는 곧 한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⁸⁴⁾ 各民戶에서 배로 내던 세금을 저화로 내게 하였으며,⁸⁵⁾ 외방의 雜貨도 저화로 내게 하였다.⁸⁶⁾ 또 사간원에서 저화의 사용을 엄하게 하도록 청하였다.⁸⁷⁾ 이후 민간에서 저화를 쓰지 않고 布만을 사용하여 물가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상오승포 쓰는 것을 금하여 公私貿易에 모두 저화를 쓰게 하였다.⁸⁸⁾ 한편 저화 통행의 신용을 보이기 위해 利貨所가 설치되고, 유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노력이 계속된다. 즉 죄를 收贖받는데 저화를 내도록 하였고,⁸⁹⁾ 집의 칸수를 계산하여 매 1칸마다 저화 한 장씩을 받는 行廊稅를 거두는가 하면,⁹⁰⁾ 布帛을 사고 팔 때 거두는 세금인 布帛稅와 서울의 집터에 대한 세금인 家基稅를 거두었으며,⁹¹⁾

각종 賞을 내리는 데에도 사용하였다. 이후에도 저화 유통을 위한 방책은 계속하여 모색되지만⁹²⁾ 실효성은 없었고, 결국 태종은 銅錢法의 시행을 도모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염려하여 이 또한 정지된다. 위와 같이 태종대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저화 정책은 태종 15년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줄었다.

세종대에는 저화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폐단이나 폐지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⁹³⁾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태종대에 시행하려다 정지하였던 銅錢을 사용한다. 즉 세종 4년에 賤해져 가는 저화에 대해 錢을 쓰자는 의견이 나온 이후⁹⁴⁾ ‘別鮮通寶’를 만들 것을 결정하고 사설서에서 관강하도록 하였다.⁹⁵⁾ 그러나 백성들은 동전 사용도 즐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 12년에는 동전 사용과 관련하여 또 한 번의 布 사용에 대한 금제가 내려진다.⁹⁶⁾

83)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7월 丙寅; 太宗實錄 卷22, 태종 11년 10월 癸卯, 태종 2년에 만든 저화에는 “三司申判”이라 쓰고 건문연간(1399~1402)이었기 때문에 “建文”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태종 10년에 저화를 다시 사용하면서 새로 만든 저화에는 “戶曹申判”이라 쓰거나, 건문연간의 저화에서 연호만 “永樂”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印信을 찍었다. 후에 호조저화만 사용하게 하면서 삼사저화는 사설서에서 호조저화와 교환하여 주었다. “命禁三司 申判楮貨 初建文年間 始造楮貨 書以三司申判 民間用之已久 其後停罷 至庚寅復行用新造戶曹申判 楮貨而或以建文年間楮貨 削年號改書楮貨 又命以三司楮貨 准換戶曹楮貨于司贖署.”

84)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9월 戊寅, “限今朔禁用羅布. 以楮布時價不一也.”

85)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9월 戊子, “命各道民戶 以楮貨代稅布.”

86)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10월 庚申, “中行楮貨之法 論議政府曰 予聞市井之人 憚用楮貨 不坐於市 多將常布行商於外 如此則楮貨 似難通行 若令外方雜貢 代以楮貨 則商賈平民 必用楮貨 宜速施行.”

87)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9월 壬辰,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10월 丁戌.

즉 京外의 大小人民들에게 남자를 정하여 포를 官에 남부한 후 저화를 받게 하고, 前年에 軍糧의 備蓄을 염려하여 거두었던 人戶의 쌀을 그 수량에 따라 저화로 주는 한편, 포를 감추어 두고 몰래 거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청한다. 이 중 민간의 포를 거두어 저화로 바꾸어 주자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 후 다시 건의하지만 의정부에서 의논토록 하는데 그쳤다. “殿下 布令中外 收民間之布 皆人公 隨其布數 給之 楮貨令出之後 私藏布匹者 繩之以律 則今日之法 可以傳之萬世矣 然而使無布之民 得楮貨之利 而威蒙 聖澤 其亦難矣 幸國家於前年慮糧餉之備 收人戶之米 願隨其米數 給之楮貨 無一家不得楮貨而爲用矣 伏惟採擇施行 命下議政府擬議施行 議政府議 得諫院狀中一疑 請收民間之布 一皆入公 隨其數 給以楮貨 右條行之勢難 且羅布 禁 已受判施行 一疑 去年所收入戶米 願隨其數 給以楮貨 右條 可依狀中施行 從之.”

88)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10월 甲午, “禁用常五升布 公私貿易 皆用楮貨 用布者 以判旨不從論 三日立示於街 決杖一百 徵楮貨三十張 先是 令五升布與楮貨通行 於是民間不用楮貨 全用布 物價湧貴 乃下是令.”

89) 太宗實錄 卷21, 태종 11년 1월 甲戌, “命杖以下罪 皆贖以楮貨.”

90) 太宗實錄 卷21, 태종 11년 1월 壬午; 世宗實錄 卷29, 세종 7년 8월 丙戌, “命凡大小人民家戶 計間雖 每一間稅楮貨一張.”

91) 太宗實錄 卷29, 태종 15년 4월 丙子.

92) 太宗實錄 卷23, 태종 12년 6월 戊辰; 同月 丙申; 卷26, 13년 10월 丁卯; 卷29, 15년 1월 丁巳; 3월 丙午; 4월 己巳; 卷30, 7월 己酉; 卷32, 16년 8월 辛巳; 世宗實錄 卷8, 세종 2년 4월 乙巳.

93) 世宗實錄 卷18, 세종 4년 12월 丁亥; 卷22, 5년 11월 丙戌; 卷25, 6년 7월 己亥; 卷31, 8년 2월 壬辰; 卷110, 27년 11월 庚寅.

94) 世宗實錄 卷18, 세종 4년 12월 丁亥, “至此官民 皆無所利 欲罷之 以太宗成憲 不敢遽改.”

95) 世宗實錄 卷17, 세종 5년 3월 甲辰.

96) 世宗實錄 卷83, 세종 12년 10월 壬午, “斗升以下米穀外 不用銅錢 全用米布者 令 京市署禁之.”

2. 布貨에 대한 가치관과 저화 정책 실패요인

태종대에 시작한 저화 정책은 위와 같이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면서 세종대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된다. 그러나 전 과정에서 백성들은 사용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백성들이 저화를 사용하지 않고 米와 布만을 유통수단으로 한 것은 그 유래도 오래거리와 필요하면 바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점과, 또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였다. 백성들이 쌀과 布만을 고집했던 이유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麻布를 화폐로 하여 五升을 썼는데 처음에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어 저자의 값[市價]이 둘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케 여기었는데…，…寶鈔를 만들어서 民間에 행하니 백성들이 보는 자가 믿지 않고 말하기를 ‘이 물건은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추위도 입을 수 없으며 하나의 緇俗일 뿐이니 어디에 쓰느냐?’ 하여…”⁹⁷⁾

“習俗이 이미 오래 되어 民心이 처음에 駭怪하게 여기므로…”⁹⁸⁾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 저화를 행하니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市井의 무리들이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지난번 壬午年에도 행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으니 오늘의 令도 또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⁹⁹⁾

“우리나라의 楮貨는 두껍고 뻣뻣하여 조금이라도 접은 것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닳으면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行使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칠을 하여 닳은 것을 기우면 重罪를 얻습니다.”¹⁰⁰⁾

“쇠돈이나 저화는 고쳐 만드는 번거로움과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폐단이 있으나, 닳새 배를 쓰면 한 사람의 노역도 한 되의 곡식도 허비하지 않을 터이니 장차 김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것이며 만년을 지나더라도 다시 고쳐야 할 폐단이 없습니다.…，…이는 동전이나 저화나 종말에는 폐단이 있오되 포화는 만년토록 폐단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부석 그릇은 비록 가마와 술 같은 큰 물건이라도 조금만 부서지면 달리 쓸모가 없지마는 포목은 비록 험했다 하더라도 모두 쓸 수 있으며, 또 관청에서 감독하는 수고가 없고 백성도 즐겨서 쓰는 이익이 있습니다.”¹⁰¹⁾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 布貨를 고집했던 것은 실용성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나라에 재앙이 있게 되면 죄수들에 대한 赦免을 행하거나 宮闕에서 宮女를 내보내며, 혹 政事를 잘못 보아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있거나 않은가를 논의하게 된다. 이럴 때에 저화를 행하여 백성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백성들은 저화 사용을 원치 않았다.¹⁰²⁾

한편 民뿐만 아니라 실무에 있는 관리들도 저화 사용을 반기지 않았다. 外官에서는 저화가 창고에 쌓여 있어 관리들이 죄를 贖할 때 綿布로 받은 후 수도에 올려 보낼 때는 창고에 쌓인 저화를 보냈고,¹⁰³⁾ 관리들이 商人들의 行狀稅를 거두는데 있어서도 저화로 바치는 경우에는 일 처리를 즉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 잠물로 바치기도 하였다.¹⁰⁴⁾

저화는 실질가치가 결여되고 병복가치만 지닌 紙

97) 太宗實錄 卷6, 태종 3년 8월 乙亥, “皆貨麻布而用五升 始可以衣人 可以市物 市價不二 民皆便之…造境內通行之寶 以行民間 民之見者未信 爲此物亂不可食 寒不可衣 一緇俗耳 奚用焉.”

98) 太宗實錄 卷19, 태종 10년 5월 辛巳, “以其習俗已久 民心初駭.”

99) 太宗實錄 卷20, 태종 10년 9월 壬辰, “至於今日 復行楮貨 可謂善矣 然市井之徒 私相語曰 錢在壬午 行之未克 今日之令 亦未可信也.”

100) 太宗實錄 卷6, 태종 13년 10월 丁卯, “今國朝楮貨 厚而勁 小有皺者不用 小軟小缺 亦皆不用 人以資持行使爲難 至有糊貼補缺以獲重罪.”

101) 世宗實錄 卷80, 세종 20년 2월 戊辰, “錢楮有更改之煩 勞民之弊 用五絁布則國無一人之役 一升之費 將家給人足 歷萬歲而無更改之弊…是知錢楮之皆終有弊 而布貨之萬歲無弊也 鐵器雖如口鼎之人物 小有破毀則他無可用 布則斷極破壞 皆可用也 且官無監督之勞 民有樂用之利.”

102) 太宗實錄 卷4, 태종 2년 7월 癸未; 卷21, 11년 6월 癸卯; 卷24, 12년 7월 甲辰.

103) 太宗實錄 卷3, *Op. cit.*

104) 世宗實錄 卷123, 세종 31년 1월 戊申, “如漢城府商賈行狀之稅 若納楮貨者 則淹延委置 不卽出給故爭以雜物輪納 此官吏先白毀之也.”

幣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행하는 정부와 이를 사용하는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자연스런 유통이란 이미 제약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저화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¹⁰⁵⁾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조선 초기에 저화 정책은 자연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당시 화폐로 쓰이고 있던 布에 대한 금제가 몇 차례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태종대부터 세종대까지의 저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상오승포에 대한 금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의 화폐는 麻布였고, 저화 사용과 관련하여 금제의 대상이 되거나 함께 논의된 布貨는 五升布·常五升布·五綜布·纒布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楮貨를 신용하지 않고 布貨만을 고집하는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의 금제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 이후의 布에 대한 금제는 저화 유통을 위한 오승포의 금제와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통상적인 화폐로 사용하던 포를 저화 유통을 위해 금지했던 것이 이 시기 布 금제의 성격이라면, 이후에는 常布로서의 오승포 자리를 삼승포가 대체하고 오승포는 정포로 불리면서 폭과 길이에서 이 정포와 상포의 7寸 35尺에 못 미치는 - 특히 길이가 - 짧은 短布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惡布를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저화 유통책의 성격 변화와도 관련이 된다. 세종대까지는 포화에 대체되는 화폐로서 저화를 유통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 때문에 布貨를 금지시킨다. 그러나 이후에는 米와 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병행하는 별도의 화폐로 저화를 거론하고, 『經國大典』에도 정포와 상포에 이어 세 번째 등급으로 저화가 국폐로 지정된다. 이렇게 포에 대한 금제는 저화 유통책과 결부되어 시대나 경제상황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V. 결 론

피륙금제는 크게 絹織物과 布에 대한 금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布에 대한 것은 조선 초기 화폐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초기 화폐로 사용된 布는 麻布였고, 저화법 추진과 관련하여 금제의 대상이 되었던 布는 常五升布, 五升布, 五綜布, 纒布이다. 이 중 추포는 오승포 중에서도 거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中宗代에 이르면 升數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길이가 짧은 短布와 함께 惡布의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조선 초기에 일상적으로 쓰이던 布이며, 7寸 너비에 길이는 35尺이다. 이를 오늘날 布帛尺으로 쓰이는 1尺을 50cm로 환산하면 약 32cm 너비에 16m의 길이가 된다. 常布는 조선 초기에 오승포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經國大典』 반포 전후로 三升布를 의미하게 되었고, 오승포는 正布라 불렸다. 『經國大典』 國幣條에는 正布와 常布의 가치가 2:1로 계산된다. 세종대 중반을 전후하여 布貨는 마포에서 綿布로 서서히 대체된다. 交織은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쓰여진 『林圀經濟志』의 내용을 근거로 經絲에 繭絲, 緯絲에 綿絲를 써서 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금제로 거론되는 것 중 ‘苧麻交織布衣’가 있고, 최근까지의 민속조사에서도 조사되는 경우가 있어 교각이 의미하는 바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

布에 대한 금제는 태종대부터 저화법을 강력히 시행하지만 백성들이 저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책은 추진하는 관리마저 그 사용을 기피하면서 내려진다. 백성들이 布貨만을 고집했던 것은 실용성 때문이었는데 저화를 강제로 유통시키고 布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유통과 많은 폐단을 발생시킨 저화법은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였고, 世宗代 이후에는 布와 楮貨를 並用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 『經國大典』에서는 布가 저화 보다는 높은 등급의 國幣로 지정되게 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105) 권인혁, “世宗代의 楮貨流通策,” 『세종대논문집(인문학편)』 17 (1984), p. 309.

- 世宗實錄.
成宗實錄.
中宗實錄.
林圀經濟志.
秋官志.
고부자 (1998). “의식주 생활풍습.” 大田民俗誌 下.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권인혁 (1984). “世宗代之 楮貨流通策.” 제주대 논문집(인문학편) 17.
권인혁 (1993). “16C 저화 유통분과 그 배경.” 건대사학 8.
김동욱 (1946). “李朝 冠帽 始末.” 아세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김동욱 (1962). “李朝初의 服飾禁制.” 중앙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제7집.
김병하 (1970). “李朝前期의 화폐유통.” 慶熙史學 2. 慶熙史學會.
민길자 (2000). “우리나라 직물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大麻와 苧麻 직물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한림원.
문화재연구소 (198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咸鏡南北道篇) 제12책. 서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문화재연구소 (198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黃海·平安南北篇) 제11책. 서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송계선 (1985). “16C 綿布의 화폐기능.”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ISAT).
원유한 (1999). “조선전기 화폐유통정책의 역사적 의의.” 東國大東國歷史教育 778.
윤국일 (1998).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신서원.
이은경 (1993).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우근 외 (1986). (譯註)經國大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